

교수업적평가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교수업적평가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9조에 의하여 동 규정의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기준점수”라 함은 승진 및 연구보조비 차등지급에 기준이 되는 점수를 의미하며 유형에 따라 각 영역 기준점수를 달리 할 수 있다.
- ② “업적점수”라 함은 세칙이 정하는 연구, 교육, 봉사의 각 영역에 대한 점수를 합한 점수를 말한다.
- ③ “연구점수”라 함은 세칙이 정하는 연구 영역에서 취득한 점수의 합을 말한다.
- ④ “교육점수”라 함은 세칙이 정하는 교육 영역에서 취득한 점수의 합을 말한다.
- ⑤ “봉사업수”라 함은 세칙이 정하는 봉사 영역에서 취득한 점수의 합을 말한다.
- ⑥ “필수 연구업적”이라 함은 연구영역에서 세칙이 정하는 일정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저서 및 독주회 등의 업적을 말한다.

제2장 교육영역평가

제3조 (교육영역) ① 교육영역은 본 대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주간 및 야간 학부, 대학원,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에서 이루어진 교육과 교내·외를 통한 학생지도 등 제반 교육활동 등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 ② 평생교육원, 연수교육, 위탁교육 등의 특수교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③ 그 세부 평가항목, 기준 및 배점은 <표1>과 같다.

<표 1> 교육영역 평가항목, 기준 및 배점

번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고
		만점기준	감점기준		
1-1	강의				
1-1-1	강의 담당 시수	① 학기당 책임시수이상은 60 점의 기본 점수 ② 학기당 책임시수에 미달시 혹은 책임시수에서 70%이상 초과시 학점 당 2점 감점(책임시수는 1년 단위로 계산함). * 현장실습은 강의 시수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③ 15시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1시수 당 예능계열은 4점 인문사회계열은 6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④ 야간, 교양, 80명 이상 대규모 강좌 중 1항목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강좌당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최대 120/학기	기본 항목
1-1-2	강의 계획서	기한내 입력	① 입력기간 이후부터 개강전 날까지 입력한 강좌 당 5점 감점 ② 개강일까지 미입력시 강좌	최대 50/학기	기본 항목

			당 10점씩 감점		
1-1-3	강의 평가	강의점수 × 10		최대 50/학기	기본 항목
1-1-4	강의 평가 활용	기한내 제출	20*(보고서제출강좌수/본인의 당해학기총강좌수) ※교무처양식제공	최대 20/학기	기본 항목
1-1-5	성적 입력 및 정정	기한내 입력 및 정정 없음	1)입력기한 초과일수 × -2점 2)정정횟수 × -1점 단 정정의 경우는 교수 과실의 경우에만 적용함.	최대 30/학기	기본 항목
1-1-6	결강유무 및 15주이상 수업여부	결강 및 15주 미만수업 없음	1. 결강신고 후 보강-> 감점 없음 2. 미신고결강 후 보강->결강 횟수X-5 3. 결강신고 후 미보강-> 결강횟수 X -10. 4. 미신고결강 후 미보강->결강횟수 X -10 5. 15주 이상 수업 -> 감점없음 6. 수업시간 미준수 및 15주 미만 수업 -> 해당 과목수X-5 7. 전자출결 7일 이내 출결체크 미준수-> 해당 과목수X-5	최대 20/학기	기본 항목
1-1-7	외국어 강의	외국어강의는 1학기에 1과목만 인정하며(내국인교수의 외국어강좌만 해당됨) 회화과목강의는 외국어강의로 인정하지 않음.		최대 20/학기	권장 항목
1-1-8	공동강의	공동으로 강의 한 경우 1학기에 1과목만 인정		10/학기	권장 항목
1-2	학생지도	평가기준		배점	
1-2-1	학생 입장 지도	참석률×100점 ※ 영어 원어민은 주당 2시간 이상의 영어센터 근무 및 여름방학 중 AIE 활동으로 대체 ※참석률산정기준 가. 기본 입장지도: 신입생 OT, 개강 및 종강예배, 모꼬지, 학과 단위의 행사참여.(단 사유가 있는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함) 나. 학과 입장지도: 학과에서 인정한 입장지도 ※참석률=입장지도회수/(기본+ 학과 입장지도) ※ 원어민 영어센터 근무점수는 시간당 10점으로 하며 AIE 활동점수는 30점으로 한다		최대 100/평가년도	
1-2-2	담임교수	학부 또는 대학원의 담임교수, 전공주임교수 및 교회음악과의 전공 주임교수를 맡았을 경우 1학기당 20점을 부여한다. ※ 영어 원어민은 주당 1시간의 English Center 근무로 대체		최대 20/학기	
1-2-3	학생 상	1.학생상담 X 3		최대 120/연간	

	담 및 멘토링	2.학생연주참관X 3 ※학기별 상담일지 제출 또는 학기별 상담보고서 제출 (1년치 제출)		
1-2-4	진로(취업, 진학, 논문지도, 졸업연주) 지도	① 졸업생의 취업을 추천하여 취업 한 경우 1명당 10점을 부여한다. (해당학생의 추천서와 재직증명서 제출, 취업은 교과부기준에 따른다.) ②재학생 및 졸업생의 취업, 인턴, 진학과 관계된 추천을 하였을 경우 1명당 5점을 부여한다. 단, 추천서 사본이나 취업을 확인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확인서는 대상 학생의 기본 인적사항, 기관명, 기관 전화번호, 해당 교수의 확인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학과에서 취업준비를 위한 세미나 개최나 프로그램 운영시, 학과 교수들에게 10점을 부여한다. 단 연간 1회에 한한다. ④논문지도를 받은 학생이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논문지도 학생 1인당 석사 5점, 박사 10점을 부여 ⑤교회음악과의 경우 학부의 졸업연주지도는 1인당 5점을 부여하고, 연간 최대 8명까지 인정한다.		①항목은 점수의 제한 두지 아니하고, ②③④⑤항목의 총점수는 최대 40/연간을 넘을 수 없다.
1-2-5	스터디 그룹	학기당 10회이상=40 5회~9회=30 4회 이하=20 ※스터디 그룹 일지 작성 제출해야 함		최대40/학기
1-3	교수개발	평가기준	배점	비고
1-3-1	교수기법 세미나 참석	1회당 20점	최대80/연간	대외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 (※만일 사유가 있어 불참 시 사유서 제출 및 자기 학습 보고서로도 대체 가능)
1-3-2	교과목 개발	1건당 20점	최대20/연간	교과목 개발 인정에 대한 심사를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함.
1-3-3	교수기법 개발	1건당 20점	최대20/연간	교수기법개발 인정에 대한 심사를 업적평가위원회에서 함.(양식에 따라)
1-3-4	강의자료 공개	30/학기(강의자료) 50/학기(동영상)	최대80/학기	한 학기 분량의 수업동영상이나 자료를 별도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학생, 일반인에게 공개(동일과목은1회에 한해 50% 인정)
1-4	교육관련 수상	평가기준	배점	비고

1-4	교육관련 수상	1)국제기구 및 국제단체의 수상, 서훈, 포상 = 30점/건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상, 서훈, 포상 = 20점/건 3)공공기관, 민간단체, 교내 등의 수상 = 10점/건	30, 20, 10/건	교육관련 수상만 해당 됨
-----	------------	--	--------------	------------------

제3장 연구영역평가

제4조 (인문·사회계열 연구영역 배점) ① 연구영역은 교수의 전공과 관련된 연구업적으로 증빙서류나 자료가 있는 것에 한정하여 평가한다.
② 인문·사회계열의 평가항목, 기준 및 배점은 <표 2-1>과 같다.

<표 2-1> 인문·사회계열의 연구영역 평가항목, 기준 및 배점

번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제출서류
2-1	논문			
	국제학술지	① 국제 전문학술지(SCI급)	900점	연구 논문 이 게재된 학술지 혹은 게재 논문 별쇄 본
		② 국제 일반학술지(심사 제도가 있는 경우) - 발행처: 외국 기관 및 단체 (외국+국내 공동발행 포함) - 발행처: 국내 기관 및 단체	500점 400점	
		③ 국제 일반학술지(심사 제도가 없는 경우) - 발행처: 외국 기관 및 단체 (외국+국내 공동발행 포함) - 발행처: 국내 기관 및 단체	300점 200점	
2-1-1	(산출기준): - 전문학술지: 인문예술 A&HCI, 사회과학 SSCI 등 국제인용색인 DB(투스노이터사, 엘스비어사)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의 학술지. 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 (SSCI) Arts & Humanities Citation Index® (A&HCI) - 일반학술지: 전문학술지를 제외한 학술지(학회, 대학부설연구소 등 비영리 학술단체가 외국어로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학술지) - 심사제도가 있는 경우, 이를 증빙하여야 함. - 공저의 경우 배점은 다음과 같음. 2인: 70% 3인: 50% 4인: 30% 5인 이상: 20% - 주 저자 및 교신저자의 경우 각각에서 10%를 가산함. -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발표시에 받은 점수의 50%를 공제한 차감점수를 부여함.			
2-1-2	국내학술지	① 국내 전문학술지 연구재단 등재지(후보포함)	300점	
		② 국내 일반학술지(정기발행)	200점	
		③ 국내 일반학술지(비정기발행)	100점	
	(산출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SN이 있는 학술지만 인정함. - 전문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 일반학술지: 전문학술지를 제외한 학술지(학회, 대학부설연구소 등 비영리 학술단체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전국규모의 학술지) - 심사제도가 있는 경우, 이를 증빙하여야 함. - 공저의 경우 배점은 다음과 같음. 2인: 70% 3인: 50% 4인: 30% 5인 이상: 20% - 주 저자, 교신저자의 경우 각각에서 10%를 가산함. -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발표시에 받은 점수의 50%를 공제한 차감점수를 부여함. 			
2-2-1	전문학술서적 (교과서포함)	① 저서	600점~420점	출판물
		② 역서	600점~420점	
		③ 편서	180점 (저서의 30%)	
		④개정서	150점 (저서의 25%)	
2-2-2	일반서적 (교양및기타)	① 저서	400점	
		② 역서	320점	
		③ 편서	120점	
		④개정서	100점	
	<p>(산출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BN이 수록된 출판물만 인정(단 교과부검정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는 ISBN이 없어도 저서로 인정함) - 전문학술서적에는 참고문헌 또는 주석/각주문헌이 있어야함. - 전문학술서적에는 전공교과서, 교과부검정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를 포함함. - 제외: 서평, 저술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편집자(편서) 등 - 기타: 이미 점수를 취득한 바 있는 학술대회 발표 논문 또는 학회지 게재 논문이 수록된 경우에는, 발표 또는 게재시에 받은 점수의 50%를 공제한 차감점수를 부여함. - 공저의 경우 배점은 다음과 같음.(기존과 동일) 2인: 70% 3인: 50% 4인: 30% 5인 이상: 20% 			
2-3	연구보고서	평가기준	배점	제출서류
2-3-1	연구보고서	배점은 1인 100%, 2인 70%, 3인 50%, 4인 30%, 5인이상 20%로 하며 주저자(연구자), 교신저자(연구자) 10%를 가산한다.	240/편	
2-4	학술발표			
2-4-1	국제학술대회	① 국제학술대회 및 이에 준하는 대회의 발표자 * 국외: 외국에서 개최된, 발표자가 3개국 이상인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 * 국내: 3개국 이상 참여하는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 대회의 이름이 국제학술대회/국제심포지엄 등 '국제'를 포	300점	2-4-1 발표 자료 은 연 간 최 대 600 점 까 지 인 쇄물 (또는 별쇄본)

		합하거나 이에 준할 것. ② 기타 국제학술대회 및 이에 준하는 대회의 발표자 * 국외: 외국에서 개최된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 * 국내: 2개국 이상 참여하는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 대회의 이름이 국제학술대회/국제심포지엄 등 '국제'를 포함하거나 이에 준할 것.	240점	정	
2-4-2	국내학술대회	① 전국단위 학술대회 발표자	150점	2-4-2 은 연 간 최대 300점 까지 인정	
		② 기타 학술대회 발표자(외부 공개)	120점		
	(공동)	(산출기준): - 원고 형식이 아닌 경우(예, 파워포인트, 포스터발표) 해당점수의 50%만 인정.			
2-4-3	좌장 또는 논 찬자/토론자	① 국제 대회 ② 국내 대회	50점/건 30점/건		프 로 그 램 홍보물
		(산출기준): - 국제대회란 위 국제학술대회 기준에 준함. - 국제대회는 횟수를 제한하지 않음 - 국내대회는 연 2건 이내로 제한함.			

제5조 (인문·사회계열 연구영역점수 인정범위) ① 모든 논문이나 저서는 교수업적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해당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② 승진이나 재임용(재계약)을 위한 연구실적물은 3인(3분의 1이상의 외부 인사 포함)이상의 평가를 받아 각 편이 평균 “우”이상인 것만 인정한다. 단, 학진등재(후보)지에 실린 논문은 평가하지 아니하고 배점대로 인정한다. <개정 2009. 3. 1.>

③ 연구업적의 경우 공동연구실적물에 관한 인정 환산율은 다음과 같다.

1. 2인 공동연구: 각 조항 단독연구의 70%
2. 3인 공동연구: 각 조항 단독연구의 50%
3. 4인 공동연구: 각 조항 단독연구의 30%
4. 5인 이상의 공동연구: 각 조항 단독연구의 20%

④ 작곡집의 경우는 ISBN 번호가 부착되어야 하며 없을 경우 배점의 50%를 인정한다.

⑤ 이미 게재된 논문과 10%이상 내용이 같은 논문은 인정하지 않으며(인용문과 예문 등은 중복에 해당되지 않음), 저서의 경우 이미 발표된 내용이 30%~ 70%인 경우 해당점수의 50%를 인정한다. 70% 이상 중복될 경우 점수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⑥ 국내외 학술지 및 학술잡지에 서평을 게재한 경우는 각 해당점수의 30%를 인정한다.

제6조 (예능계열 연구영역 배점) ① 연구영역은 교수의 전공과 관련된 연구업적으로 증빙서류나 자료가 있는 것에 한정하여 평가한다.

② 예능계열의 평가항목, 기준 및 배점은 <표 2-2>와 같다.

<표 2-2> 예능계열의 연구영역 평가항목, 기준 및 배점

번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제출자료
2-1	피아노,성악, 오르간, 실용음악			
2-2-1-1	국제연주회	공인된 국제 연주회장에서 연주하는 독주회, 독창회	600점	프로그램 혹은 팸플릿과 녹음테이프나 녹음자료
2-2-1-2	국제기타연주회	2-2-1-1에 속하지 않는 국제 기타 연주로서 독주회, 독창회 (교회 및 대학에서 열린 음악회는 이에 속한다.)	360점	
2-2-1-3	국내연주회	공인된 국내 연주회장에서 연주하는 독주회, 독창회	450점	
2-2-1-4	국내기타연주회	2-2-1-3에 속하지 않는 국내 기타 연주로서 독주회, 독창회 (교회 및 대학에서 열린 음악회는 이에 속한다.)	360점	
2-2-1-5	2인 이상 연주회	① 공인된 연주회장에서의 2인 연주 30분 기준 ② 공인된 연주회장에서의 3인 연주 20분 기준 ③ 공인된 연주회장에서의 4인 연주 10분 기준 ④ 공인된 연주회장에서의 5인 이상 연주 7분 기준 ⑤ 공인된 연주회장에서의 전곡 반주 ⑥ 공인된 연주회장에서의 오라토리오 독창 (3곡이상) ⑦ 공인된 연주회장에서의 오라토리오 독창 (3곡미만) ※ 연주자와 연주시간 두 조건이 모두 만족 되어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만족 되지 않는 경우 두 조건 중 낮은 조건에 해당 되는 점수를 부여 함 단, 연주시간은 각 조건의 연주시간의 15%내외까지 기준시간으로 인정	① 300점 ② 210점 ③ 150점 ④ 90점 ⑤ 210점 ⑥ 150점 ⑦ 90점	
2-2-1-6	오케스트라 협연 (성악, 기악)	① 공인된 국제 연주회장에서의 오케스트라 협연 (20분 기준) ② 공인된 국내 연주회장에서의 오케스트라 협연 (20분 기준)	①300점 ②210점	
2-2	성악	평가기준	배점	
2-2-2-1	오페라 주역 (성악)	① 공인된 국제 오페라의 주역 ② 공인된 국내 오페라의 주역	① 600점 ② 450점	
2-2-2-2	오페라 조역 (성악)	① 공인된 국제 오페라의 조역 ② 공인된 국내 오페라의 조역	①300점 ②210점	
2-3	작곡	평가기준	배점	
2-2-3-1	신작발표	① 오페라, 오라토리오, 협주곡(30분 기준) ② 관현악곡(10분 기준) 칸타타(30분 기준) ③ 독주곡, 규모가 큰 합창곡 및 실내악곡(10분 기준) ④ 합창곡, 독창곡 및 독주곡 등 소품(5쪽 기준)	①600점 ②300점 ③300점 ④150점	팸플릿과 프로그램,
2-2-3-2	창작-작곡집	① 오페라, 오라토리오(100쪽 이상) ② 기타 (관현악곡 및 실내악곡, 60쪽 이상)	①450점 ②300점	
2-4	지휘	평가기준	배점	
2-2-4-1	국제	① 공인된 국제 연주회장에서의 전문 합창단 지휘(단독) ② 공인된 국제 연주회장에서의 기타 합창단 지휘(단	① 600점 ② 300점 ③ 210점	프로그램 혹은 팸플릿과 녹음테이프나 녹음자료

		독) ③ 국제 기타 합창단 지휘(단독) (교회 및 대학에서 열린 음악회는 이에 속한다.) ④ 국제 기타 합창단 지휘(공동)	④ 90점	
2-2-4-2	국내	① 공인된 국내 연주회장에서의 전문 합창단 지휘(단독) ② 공인된 국내 연주회장에서의 기타 합창단 지휘(단독) ③ 국내 기타합창지휘 및 교내 합창단 정기연주회 지휘(단독) ④ 국내 기타 합창단 지휘(공동) ⑤ 공인된 연주회장에서의 오케스트라 협연	① 450점 ② 300점 ③ 200점 ④ 90점 ⑤ 150점	
2-5	공동	평가기준	배점	
2-2-5-1	음반제작	독주곡 또는 음반(피아노, 오르간, 성악, 지휘, 작곡, 실용음악 1인 제작)	300점	음반
2-6	기타	평가기준		
2-2-6-1	기타 논문, 저서, 학술발표 및 수상	인문계열 연구영역의 평가항목, 기준 및 배점에 준한다.		연구실적물 및 표창장 사본, 혹은 수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7	방송 출연			
2-2-7-1	방송 출연	① 공중파 TV 출연(연주) ② 공중파 라디오TV 출연(연주)	①100점 ②50점	

제7조 (예능계열 연구영역점수 인정범위) ① 업적내용은 발표회, 음반제작(CD, 레코드, 테이프 등)에 한한다.

- ② 업적내용의 평가는 팜플렛 혹은 프로그램과 함께 녹음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만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 단, 3인 이상 연주의 경우 녹음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동일한 작품의 발표 및 연주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일한 레파토리로 3년 이내에 행한 연주는 1회만 평가한다. 단, 레파토리의 50%이상이 변경되었을 경우 교수업적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다른 연주회로 인정할 수 있다.
- ④ 개인 독창회 및 독주회, 작곡 발표회, 지휘 등의 연주회는 공연 시간이 1시간 전후인 예술활동에 한하여 인정한다.
- ⑤ 주 전공이 아닌 연구실적은 본인이 받은 주 전공의 총점을 초과할 수 없다.
- ⑥ 음반제작은 연주시간이 1시간 전후 연주회의 음반을 500장 이상 제작한 경우에 한하고 동일한 프로그램의 연주와 음반은 1개만 인정한다.
- ⑦ 음반제작은 음반 제작 매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⑧ 종교 활동 및 수업과 연관된 연주회는 연구업적에서 제외한다. 단 「대학합창」 정기연주회는 예외로 한다.

- ⑨ 국내외적으로 공인된 연주회장이라 함은 200석 이상 전국규모 연주회장 혹은 음악회의 주최자가 정부, 공공단체 또는 교수업적평가 위원회가 심의한 전국규모 음악회를 말한다.
- ⑩ 오르간 전공의 경우 국내외적으로 공인된 연주회장이라 함은 30 stop 이상의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교회 및 대학도 포함한다.
- ⑪ 순회연주는 1회로 인정 한다.
- ⑫ 기타 논문이나 저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4장 봉사영역평가

- 제8조 (봉사영역)** ① 봉사영역은 교수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학교 운영과 발전에 기여한 정도와 사회에 대한 공헌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증빙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신청한 항목에 한하여 평가한다.
- ② 봉사영역의 평가항목, 기준 및 배점은 <표 3>과 같다.

번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제출서류
3-1	교내봉사활동			
3-1-1	보직활동	①기획위원 ②특수대학원장 및 각 학과장, 도서관장, 평생교육원장, 비서실장, ③부속 및 위탁기관장(생활관장, 보육정보센터장, 아동발달지원센터장, 한국카운셀링센터장, 사회봉사센터장), 전산실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 대학교회 담임목사, 모금센터장 ④기타 부속기관 및 교내 연구소장 및 실장(학보사 주간, 방송사 주간, 사회봉사단 책임지도교수, 각종 연구소장/실장, 교목, 어린이집지도교수, 보육교사교육원장, 산학협력단 산하 각종 사업단장, 각종 디렉터) ※상기에 명시 되지 않은 보직이 새롭게 발생 할 경우 교수업적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점수를 부여 할 수 있다.	①50점/학기 ②30점/학기 ③20점/학기 ④10점/학기	해당부서
3-1-2	위원회활동	①연구위원회 ②상설위원회 ③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위원회 *각 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물(회의록 또는 보고서)이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하며, 보고서 제출의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각 위원회 참석(위임은 불참으로 간주)이 60% 이상일 때에만 위원회 활동으로 인정함.	①10점/건/학기 ②10점/건/학기 ③5점/건/학기 최대 100점	해당부서
3-1-3	동아리 및 학생 단체 활동 지도	①학교 및 학과에서 인정하는 동아리 지도교수 ②국내 및 국외 학생단체활동 지도	①5점/학기 ②5점/학기 최대 20점	①해당부서 및 학과장의 인정서 ②임명장, 또는 기타

				입증 서류
3-1-4	예배, 회의 및 기타활동	①교직원예배 ②학교채플 ③신앙수련회 ④교수회의 참가 ⑤학과회의참가 ⑥교수연수회참가 ⑦학교(혹은 부처)주관 학교행사 참가 (80%이상 참석시 해당점수의 100%, 70%이상 참석시 해당점수의 80%, 60% 이상 참석시 해당점수의 60%. 단 예배의 경우 60%미만 참석시 봉사영역 0점 처리함. 야간 채플 1회 출석은 주간 채플 2회로 인정함).	①10점/학기 ②10점/학기 ③10점/학기 ④10점/학기 ⑤10점/학기 ⑥10점/학기 ⑦5점/건(연간 최대 20점)	해당부서
3-1-5	기타 봉사	교수협의회 회장 교수협의회 총무 대학평의회 위원	50점/학기 20점/학기 20점/학기	본항목은 중복인정하지 않음
3-2	학술단체활동	평가기준	배점	비고
3-2-1	국제학술단체	① 임원 *임원에는 학회장, 부회장, 총무(서기, 회계), 분과장, 지부장, 이사, 감사가 포함된다. ②국제학술단체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의 편집위원 ③국제학술대회 진행(좌장) ④상임고문, 상임자문위원	①10점/학기 ②10점/학기 ③5점/건 ④3점/학기 연간 최대 30점	①②④위촉장, 혹은 학회지에 실린 임원 혹은 편집위원 명단 ③proceedings
3-2-2	국내학술단체	①임원 *임원에는 학회장, 부회장, 총무(서기, 회계), 편집위원장, 이사, 감사가 포함된다. ②학술단체의 분과장 ③학술단체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의 편집위원 ④상임고문, 상임자문위원 *3-2-1, 3-2-2 중 동일 학술단체에서 두 가지 이상에 해당될 경우 상위 한 항목만 인정	①5점/학기 ②4점/학기 ③4점/학기 ④3점/학기 연간 최대 30점	위촉장, 혹은 학회지에 실린 임원 혹은 편집위원명단
3-3	교회 및 사회활동			
3-3-1	교단 및 교계 활동	①교단 및 교계 각종위원회의 위원 ②각 선교단체의 임원 ③교회내의 직분 활동 ④교회의 설교 ⑤교회의 강연, 특송 ⑥교회의 기타활동(교사, 성가대 등)	①10점/학기 ②10점/학기 ③10점/학기 ④⑤5점/건 ⑥10점/학기 연간 최대 60점	①②③⑥위촉장, 혹은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⑤주보, 팸플릿 혹은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3-2	국내외 각종 기구위원	①국제기구위원 ②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시·도), 한국연구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의 각종 위원 ③기초자치단체(시·군·구), 공공기관 및 전국규모 사회시민단체의 각종 위원, 국가고시 출제위원 ④지방규모 사회시민단체,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의 각종 위원	①10점/건 ②8점/건 ③5점/건 ④3점/건 연간 최대 60점	위촉장, 임명장, 혹은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3-3	언론 및 사회 활동	①중앙 언론매체(10대 일간지: 조선, 중앙, 동아, 서울, 경향, 한겨레, 한국, 국민, 문화, 5대 방송: KBS, MBC, SBS, EBS, CBS) 게재 및 출연 ②기타 언론매체(기타 일간지 및 방송, 케이블 방송) 게재 및 출연 ③잡지 및 인터넷 매체 게재 ④각종 강연 *제출된 업적물의 분량과 중요도에 따라서 교수 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산점 부여 가능함	①10점/건 ②7점/건 ③5점/건 ④5점/건 연간 최대 60점	게재기사의 사본, 오디오 혹은 비디오테이프 항목오류 정정
3-3-4	토론회 및 공청회 등	① 전공관련 중앙 및 전국 단위 조직의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의 발표자	15점	3-3-4 은 최대 30점을 넘을 수 없음
		② 전공관련 중앙 및 전국단위 조직이 아닌, 외부에 공개하는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의 발표자 * 1개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내부 토론회 등은 제외(예, 교회,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등)	10점	
3-4-1	대학발전기금 및 장학금 유치	①연간 10억원이상 ②연간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③연간 1억원이상 5억원미만 ④연간 5천만원이상 1억미만 ⑤연간 1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⑥연간 1백만원이상	①200점 ②150점 ③100점 ④50점 ⑤30점 ⑥5점	해당부서
3-4-2	대학발전기금 및 장학금 기부	①연간 3백만원이상 ②연간 1백만원~3백만원미만 ③연간 1백만원미만	①30점 ②20점 ③10점	해당부서
3-4-3	외부연구비유치	① 3,000만원이상	90점	
		② 1,000만원이상	70점	
		③ 500만원이상	50점	
		④ 100만원이상	30점	
		(산출기준): - 교내연구비는 해당되지 않음 - 연구비는 계약(협약)된 금액으로, 현금만 포함함. - 위 기준 금액에서 10%범위 내 오차는 허용함. -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는 시점에서 인정함. 다년계약의 경우 해당연도의 연구비만 포함. 단, 중간보고서/발표문 등이 첨부되어야 함.		
3-4-4	기타	①대학발전 기여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현저하게 대학의 명예를 높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산학협동 기여	①10점/건 ②5점/건	①해당부서 ②산학협동 기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5	봉사관련 수상			
3-5-1	봉사관련 수상	①국제기구 및 국제단체의 수상, 서훈 및 포상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상, 서훈 및 포상 ③공공기관, 기업체, 시민사회단체, 교내 등의 수상	①15점/건 ②10점/건 ③5점/건	표창장 혹은 수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9조 (봉사영역 점수 인정범위) ①연구위원회라 함은 특정 과제를 연구하도록 총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는 위원회를 의미한다.

- ② 보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상위 보직의 것만 인정한다. 단 연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경우는 제외한다.
- ③ 시민·사회단체라 함은 정부에 등록된 기관에 한한다.
- ④ 학술진흥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의 기관위원이라 함은 일회성이 아닌 일정 기간 동안 전문성을 기초로 봉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대학평가위원으로 활동하는 것도 포함된다.

제5장 평가의 유형과 결과 산출

제10조 (기준점수와 평가유형)본 대학교 교수의 연간 기준점수는 1000점이며 평가 유형은 다음과 같이 두 종류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기준점수의 영역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 ① 기본형: 교육영역 600점, 연구영역 300점, 봉사영역 100점으로 한다.
- ② 봉사중심형: 교육영역 500점, 연구영역 200점, 봉사영역 300점으로 한다
- ③ 연구중심형: 교육영역 450점, 연구영역 500점, 봉사영역 50점으로 한다. 단 연구중심형은 정년교원의 15% 내에서 총장이 결정한다.
- ④ 특별한 경우(출산, 질병, 사고 등) 최근 3년간 업적의 평균점수를 부여한다. 이 경우 교수업적평가 최종점수는 A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전에 교수업적 평가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 ⑤ 정년퇴직을 3년 남겨놓은 경우 각 영역의 취득 점수 기준을 70%로 한다.(교육 420점, 연구 210점, 봉사 70점) 단 정교수의 경우 연간 18학점 강의를 전제로 평가면제신청서를 제출 할 경우 평가를 면제 할 수 있다. 단 시행세칙 제4장 3-1-4항에 규정된 사항은 준수하여야 기준점수를 충족 한 것으로 한다.
- ⑥ 각 영역이 기준치에 모자랄 경우 각 영역의 15%(교육-90점, 연구 45점, 봉사15점)를 상호 호환 할 수 있다. 단 무단결근 3회 이상인 교원은 각영역의 점수를 상호 호환 할 수 없다.
- ⑦ 연구업적은 KRI 입력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KRI의 입력항목에 없는 연구업적은 본교 교수업적평가 입력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⑧ 업적평가 세부 항목에 포함되지 않지만 평가받기 원하는 특별한 사항의 경우 교수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영역 또는 봉사영역의 점수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연간 최대 30점을 초과 할 수 없다.
- ⑨ 연구영역은 논문이나 저서, 연주회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⑩ 무단결근 3~4회인 교원은 평가유형별 교육영역의 기준점수(기본형:600점, 봉사중심형: 500점, 연구중심형: 450점) 이상을 취득 할 수 없고 무단결근 5회 이상인 교원은 전체평가 등급을 C이상 넘을 수 없다.

제11조(평가등급) 평가결과의 등급은 다음과 같다.

- ① 각영역의 기준점수를 충족하고 1200점 이상인 경우 A등급(단, 만63세 이상의 교

- 수는840점이상)
- ② 각영역의 기준점수를 충족하고 1000점 이상1200점 미만인 경우 B등급(단, 만63세 이상의 교수는700점이상)
 - ③ 각영역의 기준점수를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1000점 미만인 경우 C등급(단, 만63세 이상의 교수는 700점미만)

제6장 평가결과의 활용 및 관리

제12조 (평가결과의 활용) 교수업적평가의 결과는 교원승진에 활용되며 각 직급별 승진 기준은 교원인사승진내규에 따른다.

제13조 (기간제 재임용 및 재계약 임용) 기간제 재임용 및 재계약 임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해당 기간의 각 영역별 기준점수의 80% 이상을 취득한 자는 재임용 및 재계약될 수 있다.

제14조 (성과급 및 포상) ① 평가결과가 A인 경우 소정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며, 지급액은 별도로 정한다.

- ② 평가결과 총 점수 상위 3인, 연구영역 상위3인, 취업추천(실재취업한 경우만 해당) 상위3인, 대학발전기금 모금 상위3인 및 각 영역 최고 득점자에 대해 총장이 시상하며 지급액은 별도로 정한다. 단 중복수상은 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한 차상위 수상을 인정 하지 않는다. 연구영역은 SCI급논문이나 학진등재(후보)의 논문으로 순위를 산정한다.
- ③ 3년 연속 상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이 시상하며 지급액은 별도로 정한다.
- ④ 평가 결과가 C인 경우 직전년도 연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 0.5%를 다음연도 보수에서 감액 지급 한다. 연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이라 함은 연간급여, 제수당, 강의료, 연구비등 연간 대학에서 수령한 모든 금액의 총액을 말한다.
- ⑤ 정당한 사유없이 교수업적평가자료를 입력하지 않거나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C를 받은 경우 연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 3%를 감액 지급한다.
- ⑥ 2년 연속 C를 받은 경우 연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 3%를 감액 지급한다.
- ⑦ 3년 연속 C를 받은 경우 연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 5%를 감액 지급한다
- ⑧ 감액된 금액은 연구목적에 사용한다.
- ⑨ 대학에서 경고, 주의 등을 받은 경우 시상(포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규정의 개폐) 이 세칙은 교무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승인으로 개정할 수 있다.
- ③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의 업적평가는 2002년 2월 1일자의 교원인사 승진에 관

한 내규와 교원재임용(재계약)지침서를 따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본 세칙 12조에 의한 교원인사승진은 교원인사승진 내규가 변경시행 되는 2012년 9월 1일 이후 적용되며 그 이전의 교원인사승진은 변경전 본 세칙 규정으로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